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423
----------	------

2026년 3월 12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2. 9., 김원태 의원(22명 찬성)

나. 회부일자 : 2026. 2. 12.

다. 상정일자 : 제33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6년 3월 12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최근 국제교류는 중앙정부 중심의 외교에서 나아가 지방정부·지방의회 중심의 실무적 교류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특히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 관계 형성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한인(재외동포) 출신 외국 지방의회 의원 등과의 교류는 언어·문화적 공감대를 토대로 보다 심도 있는 정책교류를 촉진할 수 있음.
- 이에 한인 출신 외국 지방의회 의원 등을 초청외교활동의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의 교류를 의원외교활동의 중요한 축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중 초청외교활동의 상대방인 ‘외국인사’의 범위에 한인 출신 외국 지방의회 의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외교·교류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 초청 대상에 외국 지방의회에서 의원으로 재직중인 한인 지방의회 의원 등을 추가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재외동포기본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6. 2. 20.(금) ~ 2026. 2. 24.(화) (5일간)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동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외교활동 중 초청외교활동의 초청 대상인 ‘외국인사’ 정의에 외국 지방의회에서 의원으로 재직하는 한인 지방의회 의원 등을 그 예시로 명시하여 한인(재외동포)인 외국 지방의회 의원과의 의원 외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제안되었음.

2 서울특별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및 교류현황 등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및 이에 근거해 매년 수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 주된 교류 형태는 상호결연도시 방문 및 초청과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의 해외 우수정책 현장시찰, 해외 각종 기관 주요 인사의 서울시의회 방문에 따른 면담 등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중 서울특별시의회 초청의 경우 상호결연도시를 중심으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해 지원하고 있으며,¹⁾ 그밖에 해외 각종 기관 주요 인사의 서울시의회 방문에 따른 면담 등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여비지급) ① 생략

②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상호결연의 체결) ①·② 생략

③ 의장은 상호결연 체결 및 상호 방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현황 : 15개국 16개 도시

(2026년 서울특별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연번	도시명	국가명	체결일	연번	도시명	국가명	체결일
1	뉴사우스웨일즈	호주	'96.8.28.(4대)	10	방콕	태국	'07.11.26.(7대)
2	멕시코시티	멕시코	'97.4.16.(4대)	11	상파울로	브라질	'11.5.23.(8대)
3	앙카라	튀르키예	'97.7.23.(4대)	12	비슈케크	키르기스스탄	'16.1.14.(9대)
4	바르샤바	폴란드	'97.7.29.(4대)	13	웰링턴	뉴질랜드	'18.1.18.(9대)
5	모스크바	러시아	'97.4.1.(4대)	14	베이징	중국	'22.9.19.(11대)
6	울란바타르	몽골	'97.8.27.(4대)	15	호놀룰루	미국	'23.10.11.(11대)
7	저장성	중국	'01.3.30(5대)	16	하노이	베트남	'23.12.18.(11대)
8	누르술탄	카자흐스탄	'05.5.5.(6대)	17	암만	요르단	'25.9.30.(11대)
9	알마티	카자흐스탄	'05.5.5.(6대)	18	장쑤성	중국	'25.10.15.(11대)

- 2026년 국제교류 기본계획에서도 상호결연도시 방문 및 초청과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그밖에 의원 외교활동으로 의회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해외 인사 초청을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지방외교 외연 확장을 위해 신규 상호결연도시 MOU 체결 추진 및 각종 기념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음.
- 관련하여, 2018년 조례안 제정 후 조례에 따른 초청외교활동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고, 다만 실무적으로 외국 주요인사의 서울특별시의회 방문 의사에 따라 의장단이 방문대상자와의 면담 및 교류를 하는 형태의 행사가 추진된 것으로 파악됨.²⁾

2) 해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학계·기관 등의 외국인사 등이 방문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각종 기관 및 해외 단체의 서울시의회 방문 및 예방, 간담회 등은 평균 15회 내외 이루어졌음. 서울특별시의회 국제교류 추진내역에 따르면 상호결연도시를 제외하고 해외 각종 기관 외국인사의 서울특별시 방문은 2025년 18회 내외(일본 나가사키현의회 방문, 캄보디아 프놈펜 부시장 방문,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자 방문 등), 2024년 15회 내외(일본 간사이광역연합 대표단 방문,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사업 참석자 방문, 독일 연방정부 교통에너지 사절단 방문 등) 2023년 11회 내외(케냐·우간다 중앙정부 차관 대표단 면담, 파라과이 대표단 의장 예방

3 초청 외국인사 예시 마련(안 제2조)

- 본 개정안은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가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사’ 정의에 ‘외국 지방의회에서 의원으로 재직중인 한인 지방의회 의원 등’이라는 예시적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그간 포괄적으로 운영되던 초청 외국인사 유형 중 한인 지방의회의원 등에 대한 초청 근거를 문언상 명확히 하였음.

<개정안 제2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초청외교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3. ----- -----.
가. 제3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	가. ----- ----- 의한 외국 지방의회에서 의원으로 재직중인 한인 지방의회 의원 등 ---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 이는 현행 조례상으로도 가능한 초청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조례 문언에 이를 예시로 명시함으로써 한인 지방의회 의원 등을 초청 대상으로 판단함에 있어 해석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외국 지방의회 재직 한인(재외동포) 의원 등과의 정책교류를 확대·활성화하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 문화·언어·역사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인 지방의회 의원 등과의 교류 확대는 향후 해당 외국인사 소속 기관과의 상호 방문 및 상호 결연 등 의회 간 협력 교류 확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개정안 중 ‘한인 지방의회 의원 등’에서 ‘한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재외동포기본법」 등에서 규정하는 ‘재외동포’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될 여지가 있음.
 - ‘한인’은 현행 법령상 정의된 개념은 아니나, 통상 한국계 인사를 지칭하는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정책교류 대상자를 법령상 ‘재외동포’ 범위로만 한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이에, 자의적 선정 논란이나 대상의 적격성·적합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초청 대상자를 심사·허가³⁾하는 실무 단계에서는 재외동포 관련 법령상 범주에 해당하는지 등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의원 외교가 국가 외교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혼선이나 정책적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동포 정책 및 국가외교 기조와 큰 방향에서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상의 적합성을 심사·허가하는 등 대외 설명 가능성과 공공성이 확보된 절차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의원 등 외교활동 수행주체가 외국인사를 초청하려는 경우 초청일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초청외교활동계획서를 제출, 심의를 거친 후 의장의 허가로 초청외교활동을 수행, 초청외교활동을 마친 후 20일 이내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 한편, 본 개정안은 기존 ‘외국인사’ 개념을 한인 지방의회의원 등으로 한정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한 유형을 예시적으로 명확화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다른 외국인사 초청이 배제되거나 위축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심사 과정에 유의할 필요도 있겠음.

4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초청 외교활동의 대상 외국인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한인 지방의회 의원 등과의 교류 필요성 및 의원외교의 방향성을 대내외적으로 보다 분명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언어·문화적 이해 기반이 비교적 높은 한인 지방의회 의원 등 외국인사와의 교류를 통해, 향후 상호결연 등 의회 간 협력 관계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 운용 과정에서 초청 대상 심사 및 허가 시 재외동포 관련 법령상 범주 내에서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인사인지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 그 밖의 경우에도 재외동포 및 국가 외교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않는 외국 인사임을 전제로 초청 목적의 정책적 적합성, 후속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근거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초청외교활동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운용 측면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 제7조 등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상호호혜주의에 부합

하는 예산 집행 원칙 하에서 예산을 운용하는 등 기존 서울특별시
의회의 국제교류 원칙 범위 내에서 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23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김원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길영,
김영철, 김원중,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창진, 민병주, 박춘선,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허·훈,
홍국표 의원(22명)

1. 제안이유

- 최근 국제교류는 중앙정부 중심의 외교에서 나아가 지방정부·지방의회 중심의 실무적 교류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특히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 관계 형성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한인(재외동포) 출신 외국 지방의회 의원 등과의 교류는 언어·문화적 공감대를 토대로 보다 심도 있는 정책교류를 촉진할 수 있음.
- 이에 한인 출신 외국 지방의회 의원 등을 초청외교활동의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의 교류를 의원외교활동의 중요한 축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중 초청외교활동의 상대방인 ‘외국인사’의 범위에 한인 출신 외국 지방의회 의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외교·교류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 초청 대상에 외국 지방의회에서 의원으로 재직중인 한인 지방의회 의원 등을 추가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재외동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의한**”을 “**의한 외국 지방의회에서 의원으로 재직중인 한인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3. “초청외교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제3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u>의한</u> 외국인사의 초청</p> <p style="padding-left: 20px;">나.·다. (생 략)</p> <p>4.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p> <p>가. ----- ----- <u>의한</u> 외국 <u>지방의회에서 의원으로 재 직중인 한인 지방의회 의 원 등</u> ---</p> <p>나.·다.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청외교활동”에 대한 용어의 뜻 중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외교활동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의 자구수정 등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도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경 명

☎ 02-2180-7954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